



## 제7장 민원, 지적, 지적관리, 민방위행정

제1절 일반민원

제2절 지적, 토지관리 행정

제3절 민방위 행정



# 제1절 일반민원

## 1. 『민원24』 온라인 전자서비스 구축

삼척시 종합민원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진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민원해소대책회의제, 민원·제도개선위원회, 민원모니터단운영 등 민원·제도개선 등으로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민원행정의 우수공무원 2명이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주요시책 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민원24』 지속적인 운영 홍보, 1회 방문민원처리 등 찾아오는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늘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 2. 종합민원실 운영 활성화

민원실 운영 활성화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공무원의 창구 전진 배치함으로써 종합민원실로 확대 운영하여 오고 있다.

민원안내 창구에 민원분야별로 공무원 1명씩 배치하여 민원안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 민원방문시 성실히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휴대폰 충전기 및 혈압측정기 비치, 안마의자와 TV 등을 설치하여 대시민 안내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민원실은 민원봉사과 5개 부서(민원, 호적,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교통행정과 1개 부서(건설기계등록, 자동차등록), 건축과 1개 부서(건축물 관리), 세무과 민원창구 직원 1명, 도시과(도시 제증명) 1명, 지적공사 삼척시출장소에서 민원창구에 1명 배치하는 등 총 5개과, 1공사 10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고, 총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창구는 다음과 같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연도별	정비내역	비고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폰 충전기 설치 : 3 대</li> <li>·비상구급약품세트 비치 : 2 점</li> <li>·자동혈압측정기 비치 : 1 점</li> <li>·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1 대</li> <li>·민원담당공무원 단체복착용 근무 : 11명</li> <li>·분재·화분 교체 비치</li> <li>·민원실 커튼 교체</li> <li>·도서비치, 비만도측정기 등 비치</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실 환경개선·편의시설 확충 : 4종 8,9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실현판 제작설치</li> <li>- 안마의자, 텔레비전, VTR</li> <li>-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설치 (팩스,복사기,컴퓨터,프린터기,전화기,무인발급기)</li> <li>- 화분·도서비치, 비만도 측정기 등 3종 비치</li> </ul> </li> </ul>	

※ 민원창구별 주요 민원업무 처리내역

-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 인감증명서 발급 / 여권
- ② 민원접수 / 어디서나 민원 / 민원1회방문처리 / 전자민원
- ③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 전자민원창구 운영
- ④ 자동차 등록관리
- ⑤ 건설기계등록
- ⑥ 자동차등록
- ⑦ 공과증명 발급
- ⑧ 취득세·등록세 신고
- ⑨ 지적측량 접수 등
- ⑩ 지적·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교부 / 토지정보자료
- ⑪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신청 / 토지거래 검인
- ⑫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 ⑬ 건축물대장 교부

### 3.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 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1)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

분야별 지식이 풍부한 담당급 32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및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등의 민원을 대행함으로써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 통보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및 민원서류의 보완, 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One-Stop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대부분 처리되며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특성상 신속성과 상충되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단위 : 명, 건)

연도별	후견인수	실제활동 후견인수	처 리 실 적				비고
			소 계	수 용	거 부	처리종	
2009	32	32	0				
2010	32	32	0				

##### 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련부서별 처리방안 검토 및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필요시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 실적을 보면 2009년도 80회, 2010년도 70회 개최하였다.

## 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삼척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총 14명(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사안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민원처리부서 지정,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등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였다. 민원1회 방문처리 창구를 통하여 복합·단순·고충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해결)	처리 불가					
				계	불가	반려	취하	이첩·이송	기타
복합	2009	843	729	114	7	3	104		
	2010	984	865	119	2	2	115		
단순	2009	8,038	7,655	383	236	12	100		35
	2010	9,567	9,275	292	58	21	170	1	42
고충	2009	240	224	16	3		2	3	8
	2010	196	186	10	3		3	1	3

### 분야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문화 공보	회계	주민 생활 지원	사회 복지	민원 봉사	환경 보호	지역 경제	농업 정책	산림 녹지	건설	도시	교통 행정	건축	해양 수산	상하 수도	기타
2009	2,432	21	6		405		29	8	28	178	180	223	26	230	310	13	775
2010	2,104	8			273		26	6	15	270	212	257	19	241	233	13	531

## 2)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민원인에게 법령상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행정정보공공이용대상, 기관 내부확인 가능한 자료 목록 등을 민원실에 게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공유를 해 왔다.

## 3)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확대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책으로 법정처리기간 2일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40%이상 자체 단축을 목표로 하여 2009년도 488종, 2010년도 문화 등

19개 분야 542종을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한이 남아 있음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운영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문화	총무	회계	주민	사회	민원	환경	관광	지역
2009	2,043	16		6		21		29	7	8
2010	1,837	7				11		26		6
연도별	농업	산림	건설	도시	교통	건축	해양	보건	상하수도	기타
2009	28	178	180	223	26	230	310	3	13	765
2010	15	270	212	257	19	241	229	8	13	523

## 나. 민원처리 온라인 확대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 1) 어디서나 민원 발급제도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원24』(www.minwon.go.kr)내에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간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민원발급제도이다.

취급민원은 303종이며 발급시간을 현행 3시간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처리하여 주고 있다. 우리시에 어디서나 민원 발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 민원 발급처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계			본 청		읍면동출장소	
	계	교부	처리	교부	처리	교부	처리
2009	7,315	3,206	4,109	742	3,289	2,464	820
2010	5,701	2,650	3,051	623	2,375	2,027	676

### 2) 전자민원 『민원24』 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0여종의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00여종의 서류를 확대가능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하여 오고 있다.

인터넷민원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공

인인증서는 금융거래용·일반용·공무원용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8개 분야의 24종의 행정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구비 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활용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총계	공동이용 대상정보						
		지방세	사업자등 특증명	국세납 세증명	자동차 세납세	폐업사 실증명	등기정 보열람	기타 (건축물 대장외)
2009	63,958	1,475	517	188	1,336	155	32,653	27,634
2010	75,909	938	389	119	846	78	45,017	28,522

## 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서비스 마인드 개선

### 1) 민원행정서비스현장 성실 이행

2000.6.29일 1차 개정 공표되어 운영중인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사항,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증명민원(FAX민원 신청외 15종)의 법정처리 시간보다 20%이상 단축 운영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이행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2004년도 개정 공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만족사항 등 민원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4. 주민등록 관리

### 가.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현황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촌과 농촌의 인구가 매년 3%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통합시 개척 당시 89,986명의 인구가 2010.12.31. 현재 72,046명으로 17,940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20만 인구 늘리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삼척시의 주민등록인구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읍면동별 인구현황(기준일 : 12. 31.)

(단위 : 세대, 명)

읍 면 별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계	31,233	71,935	36,490	35,445	
도 계 읍	5,417	12,445	6,376	6,069	
원 덕 읍	2,659	5,487	2,671	2,816	
근 덕 면	2,943	5,960	2,993	2,967	
하 장 면	668	1,545	840	705	
노 곡 면	440	858	448	410	
미 로 면	935	2,131	1,110	1,021	
가 곡 면	395	759	378	381	
신 기 면	387	803	443	360	
남 양 동	4,194	10,034	4,967	5,067	
성 내 동	3,608	8,885	4,438	4,447	
교 동	3,321	10,483	5,424	5,059	
정 라 동	5,266	12,545	6,402	6,143	

2010 읍면동별 인구현황(기준일 : 12.31일)

(단위 : 세대, 명)

읍 면 별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계	32,482	72,046	36,367	35,679	
도 계 읍	6,200	12,295	6,302	5,993	
원 덕 읍	2,750	5,516	2,691	2,825	
근 덕 면	2,976	5,847	2,954	2,893	
하 장 면	697	1,539	827	712	
노 곡 면	431	817	430	387	
미 로 면	971	2,116	1,111	1,005	
가 곡 면	419	771	384	387	
신 기 면	408	798	438	360	
남 양 동	4,353	10,076	4,971	5,105	
성 내 동	3,707	8,969	4,468	4,501	
교 동	4,310	10,409	5,332	5,077	
정 라 동	5,260	12,303	6,230	6,073	

##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점검을 위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읍면동 및 출장소별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직권조치 등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비·점검 병행 추진으로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5. 외국인 등록

2010년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행, 친지방문 및 거주, 구직·국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적별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명/12.31기준)

연도별	계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필리핀	기타
2009	496	164	23	26	12	8	17	246
2010	538	148	19	30	12	6	20	303

## 6. 여권 관리

삼척시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서 여권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 접수 및 교부하고 있으며, 2005년도 1,893건, 2006년도 2,395건, 2007년도 2,425건이며, 2008연도에는 2,316건, 2009년도 2,533건, 2010년도 3,529건으로 2008년도 대비 152%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여가선용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여권신청 현황

연도별	신청 건수	성 별		여권종류별			비고
		남	여	단수	복수	기간연장	
2009	2,533	1,376	1,157	466	1,818	249	
2010	3,529	1,782	1,747	659	2,630	240	

## 7. 가족관계 등록 관리

### 가. 제적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02.2.25. 호적 전산화 사업의 완료 후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6.3.15부터 호적, 제적부 및 제재부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3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 1. 1시행된 호제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개인 정보공개 최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나. 가족관계등록가구 및 인구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삼척시의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73,3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 현황을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 인구 현황

(단위 : 명)

기 관 별	구 분	가족관계등록인구수	비 고
계		173,350	
본 청		53,684	
도계읍		32,204	
원덕읍		23,393	임원출장소 포함
근덕면		28,597	
하장면		8,474	
노곡면		5,981	
미로면		11,488	
가곡면		4,738	
신기면		4,611	

## 다.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처리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은 2008년 3,546건으로 2006년 11,645건 대비 30%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2년 호적전산화 완료 후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직권정정) 사건을 제외하면 제신고 민원도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의 접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09		8,566	487	582	316	115	189	6,631	246
2010		3,324	487	585	323	128	180	1,281	340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권	호주승계	기타
2009 년도	본 청	2,434	359	272	230	86	137	1,451	75
	도계읍	1,399	71	87	48	20	33	1,100	40
	원덕읍	932	15	58	15	3	6	815	20
	근덕면	1,882	24	88	12	2	7	1,713	36
	하장면	337	1	23	5	0	2	300	6
	노곡면	259	2	11	0	2	0	237	7
	미로면	505	9	22	3	0	3	421	47
	가곡면	372	5	7	1	1	0	350	8
	신기면	270	1	14	2	1	1	244	7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0 년도	본 청	1,706	370	286	250	103	131	483	83
	도계읍	521	53	112	26	11	30	237	52
	원덕읍	254	20	54	16	6	5	122	31
	근덕면	207	20	65	12	5	3	60	42
	하장면	232	6	11	5	0	7	182	21
	노곡면	100	1	13	3	1	1	57	24
	미로면	157	15	24	5	1	2	67	43
	가곡면	74	1	11	3	1	1	34	23
	신기면	73	1	9	3	0	0	39	21

## 제2절 지적·토지관리 행정

### 1. 지적법령의 개정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만인 총 41개 조문의 지적법을 1950.12.1.(법률 제165호)로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시행한 지적법과 지세법을 분리 제정하고 조선지세령, 조선임야대장규칙을 폐지하였다.

제정된 지적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정리를 각각 서로 다른 법령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괄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까지 18여회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2. 5. 30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만 대행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불합치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적측량 업무가 일부 개방됨으로써 지적측량을 등록한 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확정 측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업무를 대행하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지적편집도 간행 판매업 등록제도 개선, 지적편집도 간행 판매업 등록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3. 12. 31(법률 제7036호) 지적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각종 도시개발과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주소체계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많은 불편한 점이 나타나 국민들이 주소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체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2006.10.4.(법률 제8027호) 지적법에서 개정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하여 2012.1.1일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2.29(법률 제8853호) 시행하게 되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간정보산

업의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측량 산업의 블루오션 실현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2. 지적공부 등록 현황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소유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목별 등록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대	공장 용지	임 야	도로 용지	기 타
지번수	143,314	35,712	15,153	20,295	183	28,443	26,698	16,830
면 적 (km <sup>2</sup> )	1186.11	56.1	15.88	7.45	0.83	1,046.71	16.65	42.49
비율 (%)	100	4.73	1.34	0.63	0.07	88.25	1.40	3.58

행정구역별 등록현황

구분 읍면동	합 계		토 지		임 야	
	지번수	면적(km <sup>2</sup> )	지번수	면적(km <sup>2</sup> )	지번수	면적(km <sup>2</sup> )
합 계	143,314	1186.11	113,461	135.94	29,628	1050.11
도계읍	15,535	164.71	11,977	17.26	3,558	147.44
원덕읍	25,357	176.00	20,986	20.99	4,371	155.00
근덕면	29,265	133.43	23,512	24.83	5,753	108.60
하장면	13,537	205.72	10,164	21.22	3,373	184.50
노곡면	9,650	144.71	6,879	8.70	2,771	136.01
미로면	15,060	99.43	11,534	13.78	3,526	85.65
가곡면	5,733	152.41	4,959	6.98	774	145.43
신기면	6,593	56.31	5,369	6.54	1,224	49.77
성내동	8,297	22.69	6,124	5.84	2,173	16.84
교 동	4,813	9.52	3,614	3.5	1,199	6.12
남양동	6,560	18.19	5,600	4.69	960	13.51
정라동	2,914	3.01	2,743	1.81	171	1.20

## 대장 현황

(단위 : 매)

구 분	합 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합 계	172,374	134,869	36,026	1,479
대 장	159,898	126,411	32,008	1,479
공유지연명부	12,476	8458	4018	0

## 도면 현황

(단위 : 매)

구 분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비 고
합 계	3,581	3,049	532	
도 면	3,296	2,768	528	
일람도·색인표	285	281	4	

### 3.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

토지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제도의 질적 향상과 토지의 다목적 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추세에 맞춰 1983년부터 지적전산 운영체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1989년부터 온라인망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임야)대장을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고, 1995년부터는 국토이용종합정보센터의 가동으로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행정시스템의 운영체제를 2001년 5월부터는 도스(DOS) 시스템에서 성능이 매우 향상된 윈도우즈(Windows)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자료 검색 및 변동자료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행정자치부, 도청에서만 제공되던 토지소유 현황 조회(조상땅 찾아주기) 업무가 지적정보센터의 확대운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직접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적도면을 과거에 종이로 작성되어 사용하던 것을 전산도면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1999년~200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8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 총 3,888매를 2003년 10월말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003년 11월~12월동안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으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정책정보 자료 제공 등 관련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구조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정보 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발사업을 2004년 7월 완료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설치 확산운영 되고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으로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 증대와 지적도 DB의 통합관리로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적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과 토지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합 발급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훼손 방지 및 토지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적 문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원부 408,925매(부책식대장 116,023매, 카드식대장 146,451매)를 예산 11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 이동결의서의 7종 (344,269매) 및 지적측량결과도(62,782매)에 대한 전산화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08년~2010년까지 3개년 걸쳐 전산D/B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산화사업 이후 매년 생산된 문서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으로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적문서통합시스템에 탑재 운영함으로써 열람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 지적도면 전산화

(단위 : 매)

구 분	총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2005	2006~	비고
계	3,888	1,019	588	2,123	158	PBLIS 시스템 운영	한국토지 정보시스 템(KLIS) 운영	2003년 도 도면전 산화 완료
지적도	3,360	1,019	585	1,598	158			
임야도	528	0	3	525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 구성

프 로 그 램	기 능 구 성
1. 지적공부관리	토지이동관리, 지적측량검사, 지적일반, 지적도면관리 등
2. 지적측량성과작성	측량준비도작성, 측량결과도작성, 측량성과도작성, 측량계산 등
3. 지적측량	삼각측량, 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 등
4. 토지행정관리	토지거래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시가관리 등
5. 도로명관리	도로관리, 건물관리, 도로명판관리, 검색, 통계, 보고서출력 등
6. 용도지역지구관리	검색/조회, 용도지역지구도작성/편집, 신규/변경/편집 등
7. 연속/편집도관리	연속/편집도관리, 자동연속/편집도정리, 변환구역 등
8. 통합민원관리	공통업무, 지적민원업무, 토지민원업무 등
9. DB관리	DXF파일 DB등록, Shape파일 전환, 도형DB공동파일 백업 등

### 지적문서 전산화

(단위 : 매)

구 분	2008년 사업량	2009년 사업량	2010년 사업량	비 고
계	219,070	159,505	28,476	매년 생산된 지적 문서는 이듬 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토지이동결의서외 7종	181,922	154,956	7,391	
지적측량결과도	37,148	4,549	21,085	

## 4. 지적민원 처리

삼척시의 지난 2년간 지적민원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에 12,240건, 보존·이전등 소유권 변동 정리에 26,289건, 대장등본 및 열람발급에 236,326건의 민원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증명 및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96,463천원에 이르고 있다.

### 토지이동 정리

(단위 : 지번수)

연도별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2009	7,227	3,782	998	667	1,780
2010	5,013	1,216	1,201	1,764	832

## 소유권 변동 정리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보 존	이 전	기 타
2009	13,537	7	8,574	4,956
2010	12,752	26	8,049	4,677

## 등본 및 열람발급 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계	대 장	도 면	기 타	수수료	비 고
2009	137,924	102,568	16,435	18,921	58,164	
2010	98,402	70,184	14,114	14,104	38,299	

## 5.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불로 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0.1.1.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2001.12.31, 법률 제6589호)할 당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산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 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8. 31부동산종합대책)

◇ 2002년 1월 1일 이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004년 1월 1일 이후)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2001. 12. 31)관련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 하도록 함(부칙 제2조) <2005.12.07 법률 제7,709호에 의한 개정>

## 6. 토지거래 규제제도

토지거래 규제제도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1978년 도입되었으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국토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등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최초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1989.4.28. 동지역, 근덕면, 원덕읍 전체(362.27㎢)가 지정되었으며, 1991.3.27. 도계읍 녹지지역(6.13㎢)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1998.1.24. 우리시에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다.

또한 신고지역은 1988.9.7. 위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1997.12.20 신고지역이 해제되었다.

### 나. 토지검인 제도

1988.8.10.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규제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관인계약서 제도의 정착을 통한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교환등기 시 시장의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1988.10.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계약서 검인제도는 1988년 도입 시에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7710호(2005.12.7.)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일부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신고현황

(단위 : 천㎡)

연도 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외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009	3,733	14,630	963	200	171	16	32	47	304	685	2,263	13,682
2010	2,855	15,548	313	165	93	9	20	8	326	967	2,103	14,399

## 지목별 토지거래 신고현황

(단위 : 천㎡)

연도별	계		전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009	3,733	14,630	1,543	2,154	1,300	200	769	12,026	7	51	114	199
2010	2,855	15,548	1,423	1,704	457	118	810	13,606	1	1	164	119

## 7. 지가공시제도

토지의 적정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일반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게 하거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목적에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토지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문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시장은 불완전하고 가격형성요인이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늘 변동하여 적정지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종전의 지가 체제는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재무부의 감정지가 등 부처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다원화된 지가 체제였다.

그 결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된 지가정보의 구축이 어렵고, 기관별로 지가를 조사·평가함에 따라 인력 및 재정낭비를 가져왔으며, 동일토지에 대하여 지가가 상이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웠으나, 종전 지가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89.4.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2005.1.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지가조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가조사체제에서 1997.7.15. 시체제로 전환하여 지적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조사를 전담하여 전문성과 지가의 균형유지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1999.9.17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면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

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선정하게 된다.

표준지의 선정 기준은 대표성, 안정성 및 확정성이 있는 토지로 선정하며, 시 전체 조사대상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지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 : 필지수)

연도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09	1,972	652	287	628	376	29
2010	1,972	657	282	631	374	28

###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 : 필지수)

연도별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미지정
2009	1,972	307	108	38	293	901	280	45	
2010	1,972	307	108	42	292	908	279	36	

## 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배율을 적용·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 대상은 우리시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표준지와 공공용지 등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에는 매년1회 1.1. 기준으로 당해연도 6.30.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6.30. 결정고시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7.1.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10.31. 결정고시하게 되며, 2005년부터는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변경하여 결정 고시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19개 항목을 조사하며, 먼저 토지(임야)대장, 종토세부과대장, 농지조서, 보존임지지정대장 등 공적장부를 통하여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용도지역·기타 공법상 제한사항을 조사하고 이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상황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 상호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결정절차

당해연도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 비교 표준지 선정 ⇒ 가격배율 산정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지가공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30일간 부여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가를 확정한다.

## 2)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현황

(단위 : 필지수)

연도별	전 체 (A)			조사대상(B)			비율 B/A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2009	142,578	95,758	46,820	107,709	89,350	18,359	75.5	
2010	143,513	95,603	48,450	115,700	89,869	25,831	80.6	

## 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법령개정 06.12.28일전에는 30일) 이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9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	2,732	92	141	207	221	180	535	243	179	231	263	191	249
검인	635	44	55	64	50	62	77	55	56	44	46	39	43

### 2010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	3,003	161	148	221	347	292	257	234	277	277	369	203	217
검인	596	38	35	48	66	43	50	55	46	52	57	58	48

# 제3절 민방위 행정

## 1. 민방위 조직 및 편성

### 가. 민방위 조직

지방단위 민방위 조직은 도의 자치행정과에 위기관리부서가,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내 민방위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민방위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 도지사 소속하에 도 민방위협의회를, 시장 소속하에 시 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도 민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15인내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 민방위협의회는 7인 이상 12인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주요 기능은 도 및 시 민방위협의회에서는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나. 민방위 편성

#### 1) 편성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하며 17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다. 20세~25세 남자중에서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연 제외자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에 의한 제외자로 구분한다. 법령에 의한 당연 제외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 소방공무원, 학생, 군인, 향토예비군 등이 있으며 심사제외자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등이 해당한다.

#### 《 민방위대편성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계		통리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2009	216	4,991	181	3,871	1	43	34	1,077
2010	212	4,914	180	3,823	1	54	31	1,037

## 2) 편성기준

민방위대의 조직은 통리 단위와 직장 단위로 각각 편성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수방, 의료, 전기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 및 직장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민방위대는 대원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29인 이하는 분대, 30~80인 이하는 소대, 81~300인 이하는 중대, 301~1,000인 이하는 대대로 편성하였다. 통리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 《 통·리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 명, 대)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30인 이하	31~50	51~100	101~300	300인 초과
2009	181	3,871	181	150	22	8	1	-
2010	180	3,823	180	151	17	11	1	-

직장민방위는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단위로 편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로써 조직하고, 직장 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의 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의 직장민방위 대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총괄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 명, 대)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30인 이하	31~50	51~100	101~300	301~500	501~1000	1000 초과
2009	34	1,077	34	26	4	2	2	-	-	-
2010	31	1,037	31	23	3	4	1	-	-	-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창설 당시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였으나 기술지원대의 전문성을 살리고 활동면에서도 광역화하여 시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규모는 지역특성을 고려 50~100명 선으로 구성하고 편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원대 편성현황(기능별) 》

(단위 : 명)

연도별	계	소화	산불 진화	방호	복구	인명 구조	화생방	안전사 고	위험 지구 예찰 활동	기타
2009	43	13	1	-	17	-	11	-	-	1
2010	54	19	6	4	18	-	6	-	-	1

《 민방위대원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계	19세 이하	20세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45세	46세~ 50세	51세 이상
2009	4,991	-	8	52	221	1,788	2,491	119	79	233
2010	4,914	-	11	52	186	1,730	2,481	91	104	259

다. 민방위대 운영

1)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

민방위대의 편성단위가 행정구역상의 통리와 직장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단위 민방위대의 대원수가 적어 실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위해 민방위대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통리민방위대와 대원 20인 미만인 직장민방위대는 인근지역에 있는 상급관서 또는 유사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규모 민방위대원 통합편성 현황 》

(단위 : 대)

연도별	통합대 수	단위대 수	대원 수	비고
2009	37	86	614	
2010	37	85	568	

2. 을지연습 운영

가. 을지연습

전시대비 총무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비상사태시 전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위기관리 능력강화 및 군·관 협조하에 전쟁수행 체계 확립과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 《 을지연습 사건처리 현황 》

(단위 : 건)

연도별	처리건수	사태별 자동조치	중앙사건 처리	도사건 처리	자체사건 처리	비고
2009	1,123	-	-	-	128	
2010	827	-	-	-	129	

#### 나. 실제 훈련상황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 시 직원의 시간대별 응소 능력을 점검하였고, 비상발령 후 시간대별 가로등 소등, 차량통제, 주민대피, 화재진압, 환자수송 등에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전시대비훈련과 위기대응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돌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대응능력 및 민·관·군 공조체제를 확립하였다.

### 3. 민방위 교육훈련

#### 가. 민방위 교육

##### 1) 민방위 교육목표

민방위대원교육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신교육 및 제반 실기 지식과 활동 요령을 습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에게 국가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실기실습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국가 안보관의 확립을 통한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의 기본목표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주관하에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단위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 2) 민방위중앙교육

후방방위와 재난수습을 위한 정예 민방위 간부요원의 양성을 목표로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사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고 민방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정보와 지식기술의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 2010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교육이수 현황 》

(단위 : 명)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계	10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8
민방위 실무자 과정	2		

3) 지방단위교육

① 기본교육 체계

민방위기본법상 법정교육시간은 연 10일간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민방위 편성후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매년 4시간씩 4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② 기본교육 실적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전문요원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일반대원 교육은 통·리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이 해당되고, 민방위대장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전문요원 교육은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원이 이에 해당된다.

《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

(단위 : 명)

대별	구분	연도별 교육실적		비고
		2009년도	2010년도	
	계	1,286	1,353	
일반대원	소 계	1,014	1,092	
	통대원 직장대원	927 87	999 93	
전문요원	소 계	67	51	
	화생방분대	19	18	
	기술지원대 재난기동대	48 -	33 -	
민방위대장	소 계	205	210	
	통리대장 직장대장	174 31	180 30	

③ 교육내용

민방위대원의 교육 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있다. 소양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국가관, 안보관의 확립과 국민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기 교육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생명구호, 전시대비 등 유사시의 사태수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④ 민방위강사 위촉

소양강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위촉하여 민방위대원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민방위 강사의 자질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매년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

구 분	소 속(주 소)	성 명	위촉년도	분 야 별	비 고
실기 교육	삼척소방서 삼척소방서 삼척소방서 삼척시 원당동 삼척시 정상동 23사 화학지원대 23사 화학지원대	김해수 임덕성 유대진 김태수 김영출 주승진 안성룡	2010년	소방안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삼척문화탐방 삼척관광 화생방 화생방	

나. 민방위의 날 훈련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예상사태에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의 침공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국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나아가 전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 구현을 해 나가고 있다.

1) 훈련시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정기적으로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하였다.

## 2) 훈련구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국가적 사회 대응력을 제고시켰으며, 훈련실시 지역내 제방위요소와 직장·지역 민방위대가 통합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였다.

## 3) 종목별 훈련실적

민방위의 날 훈련은 크게 전국 훈련과 지방단위 훈련이 있으며, 전국 공통은 민방공대피훈련,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특성은 전시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전시대비훈련은 지역·직장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화생방 방호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해, 해일, 산불진화, 설해대비 훈련 등 자연재난대비 훈련과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 및 다중 집합장소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대비 능력을 제고하였다.

### 《 2010 민방위 날 훈련실적 》

(단위 : 회)

훈련종목별	실시회수	훈 련 내 용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 훈련	2 4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자연재해대비, 인위재난대비, 지진해일대비 대피훈련등

## 4) 훈련분위기 조성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는 시범가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였으며 지역·직장 민방위대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라디오, 유선방송, 마을앰프, 직장구내방송 등을 활용, 훈련계도 방송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4. 주민신고망 운영

### 가. 주민신고의 개념

주민신고란 사회를 혼란시켜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파괴하려는 간첩, 무장계렬라, 거동수상자와 범죄자, 각종 민생치안사범, 범질서 및 각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는 국민 각자의 중요한 자율활동이다.

### 나. 주민신고망 현황

#### 1) 기본신고망

도시지역은 반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편성단위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다.

#### 2) 이동신고망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근무하는 우편집배원, 도로 하천 감시원, 운전사, 산림 감시원, 외판원, 청소원 등을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

#### 3) 고정신고망 및 특별관리망

시장·상가·유원지 등 다중집합장소와 대중이용업소·집단하숙지역은 고정신고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주민신고 취약지역인 대공취약 지역에는 특별관리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주민신고망 현황 】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264	887	63	158	156

## 5. 민방위 시설물 관리

### 가.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분되며,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48개소로 66,68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

(단위 : m<sup>2</sup>, 명)

구분 \ 위치별	계	공 용	민 간
시 설 수	48	9	39
가용면적	55,013	4,812	50,201
수용가능인원	66,682	5,833	60,849

나. 비상급수 시설

비상급수 시설은 적의 화학방 공격시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며, 민방위 지정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로 1일 970톤을 생산할 수 있다.

《 비상급수시설 현황 》

구분 \ 위치	계	정 부 시 설	기 타 시 설 (민간, 지자체)
시 설 수	5개소	3개소	2개소
1일 생산량	970톤	550톤	420톤
식수가능량	38,800명	22,000명	16,800명

